진로탐색학점제 운영규정

2022. 9. 27 제정 2024. 2. 14 개정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49조3에 의거하여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탐색을 위해 프로젝트 및 개발, 창작 등 다양한 주제 와 방법으로 교과목을 스스로 설계하여 실행하고,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제3조(운영부서) 운영부서는 진로탐색학점과정을 제안하는 전공(학과), 부서를 말하며,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주관부서로 한다.
- 제4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로 탐색학점제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학생·인재개발처장(대학일자리본부장), 교무처장, 대학교육혁신원장, 진로취업지원센터장, 창업지원단장, 단과대학 교학부장(각 1인, 학장 추천)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② 위원장은 학생·인재개발처장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④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진로탐색학점 프로젝트의 활동계획서 심의, 승인에 관한 사항
 - 3. 진로탐색학점 프로젝트 활동의 평가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제8조(대상 및 신청방법) ① 대상은 수행 학기를 기준으로 2학기~8학기 재학생으로 하고,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(교환학생 등)은 제외한다.
 - ②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에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진로탐색 지도교수 지도하에 작성하여 소속 전공(학과)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
- 제9조(승인) ① 진로탐색 프로젝트 신청 과제의 체계성, 구체성 및 신청학점의 적정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다.
 - ② 신청 과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- ③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프로젝트는 주관부서에서 신청 전공(학과), 부서 및 학생에게 통보 한다.
- 제10조(진로탐색학점제 내용 및 운영 유형 등) ①진로탐색학점제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 - 1. 기존 교육과정(전공, 교양)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젝트 : 타 전공과의 융합·창의적 내용 및 AI 등 신기술·산업분야 등
 - 2. 발전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
 - 3.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, 영상 제작 등 창작 프로젝트

- 4.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사회 기여 프로젝트
- 5. 전공심화과제 및 산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구, 개발
- 6. 지역 타 대학 및 기관과의 연합 프로젝트
- 7. 기타 학생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
- ② 전항의 내용 따라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학생주도설계형: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설정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정하여 직접 설계(진로탐색, 융복합, 창업, 창작, 사회문제 해결, 전공심화과제 등)
 - 2. 전공(학과) 제시형: 재학생 소속 전공(학과)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선택 및 수행
 - 3. 대학본부 제시형: 대학일자리본부, 창업지원센터 등 대학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이수 및 프로젝트 수행
- ③ 프로젝트 활동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주차별로 나누어 시행하나,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집중 활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.
- 제11조(학기) 진로탐색학점제는 재학 중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통해 설계,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진로탐색 지도) ① 진로탐색학점제 프로젝트 지도 및 학생관리를 위해 진로탐색 지도교수를 둔다.
 - ② 진로탐색 지도교수는 학생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교수에게 요청하여 결정한다.
 - ③ 진로탐색 지도교수는 진로탐색학점제 프로젝트 지원자의 활동계획서 검토, 활동 관리 및 평가,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 - ④ 프로젝트 심사, 지도를 위한 진로탐색학점제 심사 및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수강신청) 학생은 신청서 제출을 통해 최종 승인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수행 학기 수강 신청 기간에 최대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 개설 및 학점) ① 진로탐색학점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명 및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4.2.14.>

			Υ
교과목명	이수구분	학점	이수(활동)시간
진로탐색 프로젝트 1	- 전공선택 -	3	90시간 이상
진로탐색 프로젝트 2		6	180시간 이상
진로탐색 프로젝트 3		9	270시간 이상
진로탐색 프로젝트 4		12	360시간 이상
진로탐색 프로젝트 5	일반교양	3	90시간 이상
진로탐색 프로젝트 6		6	180시간 이상

- ② 학점인정은 재학 중 총 15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.
- 제15조(학점인정 및 성적) ① 진로탐색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보고서(중간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등) 와지도교수의 학점인정원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인정을 최종 승인한다.
 - ② 교과목의 성적은 P(PASS), N(NONPASS)으로 처리한다.
- 제16조(장학금)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 참여자 및 이수한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